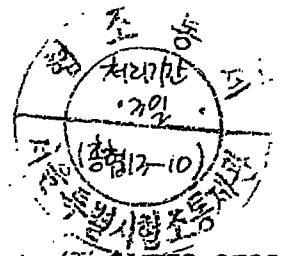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50-8712/3 /전송 750-8730
 처리부서:주택개발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2층) 담당: 이경용

문서번호 주개58531- 2466

시행일자 1995. 11. 6.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보존					
주택 국 장	전 결				
주택개발과장					
개발 2·계장					
기안	이 경 용				
합 조					

제목 쌍문제1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지정고시

1. 건설부 고시제184호(75.11.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시 고시제140(76.9.4)호로 사업계획결정되어 동고시 제548(82.12.29)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쌍문제1주택개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법률제4802(94.12.24)호에 의거 95.3.1 우이천을 경계로 강북구와 도봉구로 행정분리되어 주개30321-1238(89.8.9)호로 도봉구청장으로 시행자 지정한 강북구 쌍문 제1주택개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강북구청장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코저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자 지정 조서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구청	도 봉 구 청 장	강 북 구 청 장	

나. 시행자 변경지정 사유

(1) 법률제4802(94.12.24)호에 의하여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

원본대조필 (인)

○ 강북구지역(우이천남측)은 공공시설이 확보되고 주택개량이 72% 이루어졌으며 94.12.27 부분 환지확정 처분을 위한 용역을 발주, 환지확정 처분완료 단계이므로 강북구청장으로 변경지정

○ 관련근거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시행자지정권한의 위임).
- 도시재개발법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끝.

(제2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의뢰

1. 우리시 주택개량재개발 쌍문1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주택개량재개발 쌍문1구역 사업시행자지정

다. 법적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제4호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쌍문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변경지정 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40호 (76. 9. 4)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쌍문1구역에 대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203
월본대조필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을 시행자로 변경지정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쌍문1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지정고시 통보

1. 건설부고시 제184호(75.11.13)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40호
(76. 9. 4)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쌍문1구역에 대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을 시행자로 변경 지정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위치도 1부.

2. 고시문 사본 1부. 끝.

주택개량과장

수신처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제5안)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주택과장

제목 쌍문1재개발구역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통보

1. 강북주택58531-2051(95.10.11)호 도봉주택58531-2691(95.10.6)와 관련임.
2. 위호로 요청한 쌍문1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였기 통보하니,
재개발사업추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원본대조필
204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03 호

심사(1995.11.6)제 303 호		
담당자	정책제장	업무담당관
214	문	신

주택개량제개발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건설부고시 제184호(95.11.13)호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40호(76.9.4)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제548호(82.12.29)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주택개량제개발 쌍문1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변경지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쌍문제1구역 주택개량제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의 명칭 : 주택개량제개발 쌍문1구역
- 다. 시행면적 : 119,438㎡
- 라. 사업시행자 : 변경전 도봉구청장, 민경후 강북구청장
- 마. 사업시행인가 : '87. 2. 6 (서울시고시제166호)

원본대조